

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심 사 보 고

2000. 2. 19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20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2. 1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차 주 영)

가. 제안이유

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정비 및 일부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.

나. 주요골자

- 규칙 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한 단서조항 삭제(안 제4조)
- 용어 정비 : 지방자치단체→도(안 제5조)

- 조례·규칙의 공포방법 조정과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였으며, 고시방법은 조례·규칙의 공포방법을 준용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: 김 중 만)

충청북도 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관련법에 맞지 않는 조문의 삭제와 용어의 정비

- 규칙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한 제4조(규칙)의 단서조항 삭제 : 다만,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.
- 제5조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→ 도의 부담을

그리고 조례·규칙의 공포방법을 조정하고,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와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현 행 : 도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 
 개정 - 도지사 공포 : 도보 게재  
 - 도의회 의장 공포 : 도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, 게시판 게시
- 예산의 고시 신설 : 제7조(공포방법) ②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충청북도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조중 “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”를 “예산 및 예산외의 도의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공포방법) ①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도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 
다만,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

②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b>제1조 내지 제3조(생략)</b></p> <p><b>제4조(규칙)</b>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도지사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<u>다만,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제5조(예산등)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---- 찍는다.</b></p> <p><b>제7조(공포방법) 조례·규칙등은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</b></p>	<p><b>제1조 내지 제3조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제4조(규칙)</b>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도지사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. (삭제)</p> <p><b>제5조(예산등) 예산 및 예산의의 도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---- 찍는다.</b></p> <p><b>제7조(공포방법) ①</b> <u>조례·규칙의 공포는 도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</u>  <b>②</b> <u>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

## 관련법규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4조(운영규정)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례  
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  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